

부 령

●외교부령 제69호

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8월 1일

외 교 부 장 관 인

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

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의 나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“베트남(하노이, 호치민)”을 “베트남(다낭, 하노이, 호치민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을 달러로 지급하는 지역에 베트남 다낭을 추가하려는 것임.

<외교부 제공>

●행정안전부령 제131호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8월 1일

행정안전부장관 인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2항 중 “차량제원”을 “차량의 성능·특성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구급지도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.

- 1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
- 2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및 구급지도관의 선발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의료인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구급지도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 <행정안전부 제공>

●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5호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8월 1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나목 중 “총톤수·전장 및 전폭”을 “총톤수·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”를 “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”으로 한다.

제54조 중 “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”를 “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 제1호나목(3) 중 “시설(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, 사다리, 계단시설, 윈치,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)”을 “시설[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, 사다리, 계단시설, 윈치(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기계설비),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]”로 한다.

별표 10의2 제3호 중 “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사업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항목에 관한 기준(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II등급 기준을 적용한다)에 따라 사업장 내 풀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한다.

별표 10의2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사업자는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를 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.

가. 제7호 각 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: 연 1회 이상. 다만, 제7호 라목 및 마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

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7월 및 8월의 경우에는 제7호 각 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

별표 10의2 제10호다목 본문 중 “국민안전처장관”을 “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0의2 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